

## 기자설명회

#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일시 장소 : 2023. 3/22(수) 오전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람드리홀

공동주최 :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 자 료 목 록

### I. 국회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2023. 3. 2.)

- 보도자료
- 의견서

### II.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정책

- 보도자료: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수용 (2022. 10. 21.)
- 결정문: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2022. 4. 11.)

### III. EU 인공지능법안 자료

-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ISDI(2021)
- EU 인공지능법안 부속서 (일부)
  - 부속서 II, III : 고위험 인공지능 목록
  - 부속서 IV :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 문서 의무

### IV. 미국 정부 인공지능 규제 접근

-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기본원칙 번역)
- 미국 의회 알고리즘책임무성 법안 (발췌 번역)

### V. 주요국가 인공지능법안 관할기관 (발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홀리스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15개 인권시민단체 (담당 : 진보네트워킹센터 오병일 대표 02-774-4551 / 민변 디정위 김하나  
             위원장 02-522-728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제 목      [보도자료]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날 짜      2023. 3. 2. (총 15 쪽)

## 보 도 자 료

###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2) 지난 2/6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인공지능법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인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능화정보법과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입법의 필요성도 의문이며,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 입법정책의 예에 비추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담보할 수 없고, 소관 부처도 적절하지 않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2. 인공지능은 이미 기술,공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전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편익성 이면에 데이터 결함과 오작동 가능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A/HRC/48/31)는 2021.9.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3.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AI Act)>은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금지/고위험/저위험/허용 등 4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및 성평등에 관한 기존 정책 및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를 보완하며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도 주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책무성법안>과 빅테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및 표적광고를 규제하는 <연방상하원 6개 빅테크 규제법안>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도 국가의 인공지능 공공 조달에서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 사전영향 평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보장, 데이터 편향방지 및 품질 보장, 구제수단 마련 등을 요구하는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입법 추진 동향과 연구 및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은 적어도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4. 그러나 이번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은 국내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과기부를 소관부처로 하여 일임하는 규정들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단체들은 지적한다. 특히 소위안 제11조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피해 구제를 규정하지 않고,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은 국내외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입법기준뿐 아니라 주요국가의 인공지능법안의 방식과도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가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과 인권기준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제품적합성 평가 기관, 또는 시장 감시와 관련된 기존의 규제기관들이 규제를 우선 집행하고 우리의 과기부같은 인증이나 기술부처는 그

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위안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선 허용 후 규제'라는 잘못된 원칙에 맞게 개악하도록 하고 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후 소위안에 규정된 고위험 규제조차 모두 형해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라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5. 결론적으로,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안전과 인권 보장 규제를 모두 완화한 점,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입법목적과 소관하는 내용 대부분이 유사 또는 중복되어 별도 입법의 필요성이 낮고, △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 업무 등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과기부가 소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법률의 정당한 조치와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를 침범하고, △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달리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가 자의적이며 부분적이며,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가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 인공지능이 기술, 공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전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현실에서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수준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고 조치하는 규제기관의 작용과 감독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공공 의사결정이 오류, 안전,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현재 시점에 제정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과기부가 소관하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른 규제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15개 인권시민단체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소위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붙임)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소위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안전과 인권 보장 규제를 모두 완화하고  
과기부와 그 산하기관이 독점하는 입법에 반대함

### ▣ 인공지능 관련 입법의 필요성과 동향

◎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안전과 인권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음

- 안전의 문제 :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사망 사고, 경비로봇의 유아 공격, 인공지능 스피커의 오주문 등 인공지능 제품은 그 편의성 이면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왔음. 특히 데이터 결함, 오인식 등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으며, 데이터·알고리즘·제품 개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수많은 제조자, 판매자, 사용자 간 책임 문제가 복잡하고, 제조자-사용자 간 정보 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제품 안전 및 소비자보호 등을 소관하는 규제 당국의 효과적인 조사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 또한 요구되어 왔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 선개발, 후규제의 태도로 관련 문제제기를 외면함.
- 인권의 문제 :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혐오발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무부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내외국인 얼굴정보 무단 이용, AI면접 및 채용 프로그램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 왔음.
-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널리 도입되어 있음.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생활공간 곳곳에서 마주치기 시작한 배달로봇,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사회복지 부정수급방지AI 및 인공지능 치안 등 공공부문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공공장소의 얼굴인식 등이 이미 사용되고 있음. 이들 중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오픈AI사의 챗GPT,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Bing 등 인공지능 챗봇과 검색 엔진은 오남용 및 계속된 오류로 인하여 표절, 사기 및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그 위험성과 윤리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챗GPT 개발책임자조차 규제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챗GPT 규제법이 발의되기도 하였음. 국내에서도 챗GPT는 이완용을 ‘조선의 독립운동가’로 답하는 등 여러 오류 사례가 발견되었음. JP모건·버라이즌은 챗GPT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챗GPT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과 교육 업무에 활용할 계획을 밝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 이에 인공지능과 사회 정책에 대한 입법은 반드시 안전과 인권에 대한 위험을 국가적으로 감독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내용과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내외에서 널리 형성되어 왔음.

◎ 인공지능 입법에 대한 국내외 규범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은 입법 내용을 요구하여 왔음.

- 유엔 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환경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민간 부문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더불어 입법 내용에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 유엔인권최고대표(A/HRC/48/31)는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 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음. 특히 최고대표는 인공지능에 대한 입법 및 규제가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었음. 입법 조치는 인공지능에 대한 적정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 체계를 포함해야 하고, 감독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소비자 보호 기관, 부문별 규제 기관, 차별 방지 기구 및 국가 인권 기구를 포함하여야 함.

유엔인권최고대표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A/HRC/48/31)

IV-B. 입법 및 규제 제안

-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으로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함.
- 인공지능 규제는 특히 법 집행, 국가안보, 형사사법, 사회보장, 고용, 보건의료, 교육 및 금융 등 개인의 이해관계가 특히 높은 분야가 우선시되어야 함.
-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는 국제 인권법하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인공지능에 대한 금지를 요구해야 함.
- 차별 금지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인공지능의 사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해당 시스템의 사용과 판매를 규제하여야 함.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간의 감독 및 의사결정의 의무적 개입이 규정되어야 함.
- 특히 원격 실시간 얼굴 인식과 같은 잠재적인 고위험 기술의 사용에 대해서는 유예(모라토리엄)하여야 함.
-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적정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이러한 감독 체계에는 개인정보보호 기관, 소비자 보호 기관, 부문별 규제 기관, 차별방지기구 및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여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권고하면서 인공지능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권고는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당사자의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 등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개인 정보 보호, 차별 금지 등 그 규제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2021년 5월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에서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왔음.

- 연내 제정되어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AI Act)>은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금지/고위험/저위험/허용 등 4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를 비롯하여 이 법의 규제를 소관하는 각국 감독 기관으로는 제품 적합성 평가 기관 또는 시장 감시와 관련된 기존의 제도(**conformity assessment bodies or market surveillance**)를 활용하도록 함.
- 챗GPT와 같은 일반AI(GPAI)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내용도 추진할 예정임.
- 이 법안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및 성평등에 관한 기존 정책 및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를 보완하며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2021. 4. 21.)

전문 1.2. 정책 분야에서 기존 정책 조항과의 일관성

- 본 제안의 수평적 성격은 고위험 AI 시스템이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적용되는 기존 유럽 연합 법규와의 완전한 일관성을 요구한다.
- 또한, EU 기본권 헌장과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및 성평등에 관한 기존의 유럽 연합 2차 입법을 통해서도 일관성이 보장된다.
- 본 제안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Regulation (EU) 2016/679)과 법 집행 지침(Directive (EU) 2016/680)을 침해하지 않으며, 특정한 고위험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사용에 적용되는 일련의 조화 법령과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의 특정한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이를 보완한다.
- 나아가, 본 제안은 특히 AI 시스템의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세트의 설계 및 품질과 관련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 요구사항과 AI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테스트, 위험 관리, 기록 및 인간의 감독에 대한 의무를 통해 차별 금지에 관한 기존의 유럽 연합 법규를 보완한다.
- 본 제안은 유럽 연합 경쟁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미국 정부와 의회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연방 상하원 알고리즘 책무성법안) 빅테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및 표적광고를 규제(연방 상하원 6개 빅테크 규제법안 패키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옴.
  - 이 법안들은 불공정거래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주무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관임
  - 2022. 10. 백악관은 AI 권리장전을 발표하여 인공지능의 인종·성차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함.
  - 2023. 1. 11.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에 직접 기고하여 규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여 화제가 되었음.
- 영국 <인공지능 조달 지침>이나 캐나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훈령>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공공 조달 규범의 경우, 공공부문 업무와 그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사전영향평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보장, 데이터 편향 방지 및 품질 보장, 구제수단 마련 등을 요구하는 규제를 이미 시행 중임.

◎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입법 추진 동향과 연구 및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은 적어도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함.

- 소위안은 국내외 기준이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리한 소관 규정들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함.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한 행정기본법(제20조)이 이미 2021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중요한 조치나 의사결정에 사용될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 그 위험 영향을 평가하거나 완화할 의무, 출시 전 검사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할 의무, 개발이나 운영 중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의무,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할 의무, 작동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 인간이 관리감독할 의무, 시스템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등을 규정하는 법적 보호 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대한 기본법을 중복제정하는 것에 반대함

【소위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위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서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이 법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에 소관하여 온 분야인 인공지능 기술이나 산업에 관한 진흥뿐 아니라 인공지능 일반과 인공지능사회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우선 따르도록 하였음.
  - 향후 다른 부처가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목적에 귀속됨.
-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기본법으로는 같은 부처 소관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이미 시행 중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목적 또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위안과 유사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지원하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정의 역시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소위안이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정의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또한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과 관련한 종합계획, 실행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실용화·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결국 소위안은 이미 시행 중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목적과 소관하는 내용 대부분이 유사하거나 중복됨.
  - 소위안에 병합된 7개 법률안(이상민안, 양향자안, 민형배안, 정필모안, 이용빈안, 윤영찬안, 윤두현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한 많은 내용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유사·중복되며, 두 법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이상민안, 양향자안, 민형배안, 이용빈안, 윤영찬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다른 부처 또한 위원회 역할이 다른 법률과 유사·중복된다거나(행정안전부, 정필모안에 대한 의견), 나아가 별도 입법 필요성이 낮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산업통상자원부, 이상민안·양향자안·민형배안·정필모안에 대한 의견)
- 소위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 업무를 완화하고 참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음. 이는 소위안의 진정한 제정 목적으로 의심되며,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한다고 명시한 이 법의 목적이 매우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는 것에 반대함

**【소위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8.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18조(제도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인류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위안이 규정하는 인공지능윤리, 신뢰성 및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정의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이 법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과 사회 정책 일반에 대하여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됨.
  - 소위안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윤리의 경우, 정의(제2조), 인공지능윤리원칙 등(제23조)으로부터 도출되는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일컬음. 또한 “인간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이자,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이고, “인간과 인류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아우름.

- 법률명 및 이하 다수 조항에서 언급되는 ‘신뢰’의 경우, 정의(제2조),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제23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제24조)으로부터 도출되는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폭넓은 문제이며,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제품 안전에 대한 문제를 포괄함.
- 따라서 소위안이 정의하고 소관하는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에 대한 정책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규제기관에서 소관하는 제품 안전, 소비자 보호, 인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분야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
- 그럼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판단하고 권고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음.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윤리, 신뢰성, 인공지능사회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권고 일반을 소관하는 것은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에 비추어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 법의 산업 진흥 목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인권 침해 및 차별의 방지 등 다른 법률이 보호하는 가치가 경합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가 본연의 산업 진흥에 치중될 우려가 있음.

▣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법률의 정당한 조치와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를 침범하는 사후규제 독소조항에 반대함

**【소위안】**

제11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소위안은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하의 절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나아가 소위안은 단순히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천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파급력이 상당함. 이러한 원칙은 폐기되어야 함.
- 소위안이 인공지능의 문제 일반을 폭넓게 소관하고 있음에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목적 조항에 위배될 뿐더러, 국내외 인공지능 입법 기준에 크게 위배됨.
  - 국내외에서 권장하는 인공지능 입법 기준 뿐 아니라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법안의 내용은, 국가가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과 인권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제품 적합성 평가 기관

또는 시장 감시와 관련된 기존의 규제기관들이 이 법의 규제를 우선 집행하고  
인증이나 기술 부처는 그 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함.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에서는 이 법을 소관하는 국가 감독 기관이 인공지능 제품의 학습,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소스 코드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4조). 특히 소관 기관 뿐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평등기구 등 규제기관들 또한 이 법에 따라 작성된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감독 기관과 협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함(전문79). 이를 위하여 이 법안은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 공급자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서화 의무를 부여하고(제11조 및 부속서 IV), 중대한 사건 및 오작동에 대하여 감독 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제62조).
- 소위안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기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품안전 등에 대하여 판단하고 규제해 온 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선적으로 확인(판단)하도록 함.
- 소위안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피해 구제를 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함.
  - 소위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기관이 특정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위험성을 인지하더라도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안” 됨. 따라서 규제기관은 일단 출시 후 사후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에 종속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봉쇄하고 있음.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비롯하여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시 전 위험영향평가, 적합성평가, 데이터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출시전 테스트 등 다양한 사전 영향평가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따라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조항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봉쇄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의 목적 조항 뿐 아니라 이후 소위안에 규정된 고위험 규제조차 모두 형해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인공지능위원회의 결정이 다른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소위안】**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①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인공지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국가기관등, 인공지능사업자 및 제22조에 따른 대한인공지능협회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하 “권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권고등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감사위원 1명을 두며, 감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분석
2.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의 배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국민생활의 변화와 적응 및 안전한 이용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8. 제6조제6항에 따른 권고등에 관한 사항
9.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10.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2. 그 밖에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위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간사로서 사실상 운영하는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 인공지능위원회의 소관과 기능을 규정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위원회는 고위험 인공지능 뿐 아니라 인공지능 일반 관련 모든 정책과 제도 및 그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항들을 ‘수립’하고 ‘개선’하고 나아가 ‘조정’하는 ‘심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또한 인공지능위원회는 모든 국가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개선·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과 사업자 등의 인공지능 사용, 윤리, 신뢰성, 안전성에 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짐. 따라서 인공지능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의사결정의 최고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다른 규제기관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소관하는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인권 침해와 차별 방지 관련 제도의 마련과 운용을 침범할 수 있음.
- 인공지능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작용과 별도로 이들의 업무와 중복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이들과 다른 비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음.
  - 인공지능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여기에 각 규제기관이 참가한다면 본래 소관하고 있는 결정 권한과 관계없이 여러 위원 중 하나로 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됨.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에 따라 업무와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 국민의 안전이나 인권에 위험을 미치는 인공지능에 대해 정하는 결정 사항은, 산업 진흥이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이 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주되게 조정하고 관장할 사항이 아님.
  - 인공지능위원회 설립의 주요 목적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이며, 위원회는 막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그 근거를 조사하고 자료를 제출받을 법률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 반쪽 기구임. 따라서 다른 규제기관이 소관 법률에 따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조사 또는 결정한 산업 규제 관련 사항이, 위원회의 산업 진흥 편향적이며 근거가 빈약한 의사결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 ▣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가 자의적이며 부분적임

##### 【소위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마.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를 분석·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사.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제26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소위안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한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는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에 비하여 중요한 분야를 누락하고 있음.
-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방지될 수 없는 수준에 달해 금지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기존에 유럽연합 법률에서 제품 안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거나 적합성 평가 대상이 포함된 인공지능 제품을 일관된 고위험으로 우선 규정하고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함. 이는 기계류, 장난감, 승강기, 폭발물, 무선 장비, 압력 장비, 공중 케이블, 개인 보호 장비를 아우름.
  - 우리나라 또한 제품안전인증, 산업안전인증,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를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 안전 제품을 관리하여 옴.
  - 소위안의 정의는 고위험 인공지능 안전 제품을 열거함에 있어 기존 안전 제품을 일부 포함하였으나, 원칙과 보편성을 갖추지 못함.
  - 소위안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임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적으로 확인(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인권에 미치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인공지능을 대체로 모두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그 위험도가 완화되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금지’하는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그 위험도가 관리될 수 있는 분야의 경우 ‘고위험’으로 규정함.
  - 소위안은 생체정보의 분석·활용의 경우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라는 일부 업무”에 한정하여 고위험으로 지정함. 그러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은 공공장소 원격 실시간 생체 인식을 우선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나머지 자연인에 대한 ‘실시간’ 및 ‘사후’ 원격 생체 인식을 모두 고위험으로 지정함. 특히 공공장소 원격 실시간 생체 인식은 이동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하여 국제인권기구 및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소위안은 한국에서도 현안이 되고 있는 공공장소 얼굴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과 추적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와 무관한 생체 인식을 고위험에서 제외함.

- 소위안은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을 고위험으로 규정하였으나, ‘중대한 영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채용, 대출 심사’ 등 매우 자의적이고 제한적인 예시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다른 나라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 위험이 높은 인공지능 분야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며 많은 인권 침해 분야를 고위험에서 제외함.
- 소위안처럼 ‘중대한 영향’이라고 규정한다면 ‘중대한 영향’이 아닌 영역은 허용하는 취지로 보이며, ‘중대한 영향’에 규범적 판단까지 개입하게 되면 허용 범위를 더 넓힐 우려가 있어 보임. 반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고용, 노무 관리, 자영업에 대한 접근, 특히 인력의 채용과 선발, 승진과 해고에 대한 결정, 업무 할당, 모니터링 또는 업무 관련 계약 관계에서 개인의 평가 등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역시 당사자들의 미래 직업 전망과 생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위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전문36)”라고 정하고 있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자체를 고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중대한’이란 표현은 삭제되어야 함. 객관적으로 ‘영향’ 또는 ‘결정에 대한 영향’을 그 자체로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보아야 함.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과 비교하여 소위안에서 누락된 고위험 분야로는 해외에서 논란이 된 인공지능 입학시험이나 성적 평가, 회사에서 노동자를 관리/모니터링하거나 플랫폼 노동/자영업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신용 평가, 소방의료 응급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미국 알고리즘 책무성법안(2022) 또한 규제 대상이 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모든 금융서비스, 주택 및 숙박,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규정하고 있음.
- 소위안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고위험으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의사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세계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수사기관의 각종 평가 및 예측 치안, 출입국관리 업무의 각종 평가 및 조사, 재판 업무 등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편향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고위험에서 제외함.
- 특히 국민의 소비자 권리, 개인정보 보호, 인권 및 차별에 미치는 위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적으로 확인(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가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함

**【소위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9.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10.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제26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활용·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지 의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자 또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라 한다)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하 “신뢰성 확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신뢰성 확보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위해 학습된 데이터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
4. 이용자 보호 방안
5.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기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소위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인공지능위원회에서 그 규율이나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규율의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일상적으로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
  - 인공지능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적인 조사와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규제기관의 판단에 대하여 중복적이거나 충돌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음.
- 소위안은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를 일부 규정하였으나, 고위험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제27조) 대부분 내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침(제28조). 게다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는 아무런 벌칙이나 조치 사항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음. 고위험 인공지능의 시판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 이상 구체적인 위험 방지 조치의 내용이나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바가 없음.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등 주요 국가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 의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국가 감독 기관 협조 의무 등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들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설명조치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부적인 ‘설명방안’을 마련하면 족하도록 규정하였음. 특히 인공지능 위험성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나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험 영향을 평가하거나 완화할 의무, 출시 전 검사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할 의무, 개발이나 운영 중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의무,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할 의무, 작동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 인간이 관리감독할 의무, 시스템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인증·등록·보고 의무 등이 세세하게 규정되어야 마땅함.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금지된 인공지능을 출시한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세계 총매출의 6%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 감독 기관의 조사에 대한 협력 등 의무 위반시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세계 총매출 4%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 감독 기관에 부정확·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세계 총매출 2%의 벌금을 부과함.
  - 미국 연방상하원 알고리즘책임법안의 경우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 미국법을 위반하여 시장에 출시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FTC법 제18조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정의하는 규칙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 ▣ 결론: 소위안의 입법에 반대함

- 국가가 입법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은 특정 부처의 소관에 매몰됨이 없이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전체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감독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국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어야 함.

- 인공지능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규제하는 국가의 임무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에 대한 진흥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기존의 규제 부처에서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공공장소 원격 실시간 생체 인식처럼 위험이 완화되기 어려운 인공지능에 대해서 ‘금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발과 이용 사업자에게 명확한 책무를 부과하며, 위반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소위안은 ‘기본법’으로 마련되었음에도 규제를 완화하는 주요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관기관의 업무를 확대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데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규정이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음.
  - 기술과 산업 진흥 업무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법 뿐 아니라 현행 다른 법률, 나아가 이후 제개정될 인공지능 일반과 인공지능윤리와 신뢰성, 인공지능과 사회에 대한 모든 법령 및 정책에 대한 판단과 규율 전반을 광범위하게 소관하는 것은 월권임. 또한 소위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작용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서 다른 규제 법률의 적용 및 규제기관의 작용을 우선적으로 금지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소위안이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였다라는 점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다른 부분이 있음.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이를 규제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국가 작용을 규정한 바가 없음. 오히려 우선적용, 사후규제 원칙으로 다른 규제기관의 개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함.
- 결론적으로 소위안은 최근 챗GPT 등 특정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유행 사례를 배경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유사중복되는 기본법 제정의 문제점조차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소위안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위험과 그에 대한 기존 규제기관의 작용 등 국가 전체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나 규정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에만 매몰된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음.
- 국가적 수준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고 조치하는 규제기관의 작용과 감독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공공 의사결정이 오류, 안전,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현재 시점에 제정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른 규제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될 것임.

<끝>





보도자료 | 배포일자: 2022. 10. 21. | 보도일자: 2022. 10. 21. | 홍보협력과장 직무대리 육성철(02-2125-9875)

담당부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과장: 조형석(02-2125-9820) | 담당: 문진경(02-2125-9831)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기관장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11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국무총리에게,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 및 통할할 것을 권고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것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사업을 조정·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

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2022년 9월 26일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인권적 가치의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 아울러, 이러한 권고와 이행 상황을 알림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인권위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제도를 꾸준히 점검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친화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결 정

제 목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1. 국무총리에게

[붙임]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권고합니다.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가. [붙임]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붙임]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유

## I. 권고의 배경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빠른 발전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개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안면인식기술이나 인공지능에 의한 채용, 플랫폼 노동, '이루다' 사태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차별 등과 같은 인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인공지능의 도입, 운영, 결정에 대하여 의견 제시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인공지능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부터 개인의 삶과 사회적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권에 기반하여 활용하며, 인공지능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예방 및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 II. 판단 및 참고기준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 EU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2019), OECD의 인공지능 권고(2019) 등

### Ⅲ. 판단

#### 1.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인권 기준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국제 인권 기준은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최우선적 가치로 명시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인공지능의 개발, 배치, 활용 등 전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결과에 대해 적절한 보호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학습한 결과로 차별을 조장하거나 지속시킬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편향, 불완전성 등에 대한 사전적 식별과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 인권 기준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설명가능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중요시하고 있다. 설명가능성 또는 투명성이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내려진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그 이유, 과정, 결과 등을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책임성은 인공지능의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부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은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기술과 관련이 있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나 사생활을 추적·감시하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보안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 2. 인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권에 대한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제도와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성장에 중점을 두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각 정부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적 이슈로 접근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인권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 혐오와 차별,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적 관심을 받는 주제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지만,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개인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등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는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윤리 기준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국가의 법률 등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인권 기준과는 의미와 규범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점이 점차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제도나 기준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3. 인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1) 인간의 존엄성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누구나 누려야 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어떠한 활동도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권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모든 활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과 판단 및 결정을 강요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

## 2) 투명성과 설명 의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판단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조달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설명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든 인공지능과 민간이 개발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 중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 등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은 사용된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만 개인에게 법적 효력 또는 생명, 신체, 정신,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방식을 거부하거나 인적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3) 자기결정권의 보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단순한 외형적 의사 표시만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반 상황을 충분히 설명받고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사용, 보관, 삭제하는지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되고, 처리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내용과 관련성이 없거나,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해야 한다.

#### 4) 차별 금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신체조건, 피부색,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등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데이터의 수집 및 시스템 설계, 활용 등 인공지능 개발 전반에 걸쳐 편향이나 차별을 배제해야 하고, 데이터 요소를 검사하고 차별적인 데이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발한 인공지능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데이터 품질과 위험을 관리하고, 차별적 결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개선의 조치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5)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국가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와 차별의 가능성 및 정도,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수, 사용된 데이터의 양 등을 고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내용에는 인공지능의 특성, 상황, 범위 및 목적을 감안하여 인권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원칙 및 내용, 국제 인권 기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권침해 위험요인의 분석 및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야 한다.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편향성 및 위험성이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 6)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국가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개발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인권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침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인공지능이 금지되는 영역, 상당한 제한이 필요한 인공지능 고위험 영역,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 제한적 위험성을 가진 영역, 위험성이 거의 없는 영역 등 적절하게 인공지능의 위험성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규제 수준과 인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개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붙임]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2022. 4. 11.

위 원 장 송 두 환

위 원 이 상 철 <불참>

위 원 박 찬 운

위 원 남 규 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석 원 정

위 원 서 미 화

위 원 윤 석 희

위 원 김 수 정

위 원 한 석 훈

[붙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 제1장 개요

#### 제1절 제정 배경

1. 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도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의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점차 적용영역을 넓혀 사회 전반과 개인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3.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은 국가경쟁력과 개인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4. 반면 인공지능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인공지능의 도입, 운영, 결정에 대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5.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인의 삶과 사회적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및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 등 기본적인 인권에 기반을 두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본 가이드라인은 인권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6호에 따라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제2절 목적과 의미

8. 본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인권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9.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 적용할 인권원칙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영향을 받는 당사자 등에게 주어진 권리 및 피해 구제수단을 제공하며, 정부에게 적절한 법령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 본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의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인공지능 개발자, 이용자, 영향을 받는 당사자,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 제3절 정의

11.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의미하는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12.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은 일차적으로는 학습과 추론, 판단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알고리즘과 해당 프로세스를 지칭하나, 이차적으로는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을 기능하게 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13. ‘영향을 받는 당사자(affected individuals)’ 는 국가나 기업의 규정 또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의 적용대상이 되고,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 제2장 가이드라인 내용

### 제1절 인간의 존엄성 존중

14.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누구나 누려야 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국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적 가치입니다.
15. 어떠한 활동도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권리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모든 활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16. 인공지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과 판단 및 결정을 강요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17.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공공성의 증진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노동권 등 인권을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 제2절 투명성과 설명 의무

18. 알 권리란 개인이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알 권리를 통해 개인은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합리적인 판단과

자신의 인격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19. 이러한 알 권리의 보장과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의 판단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습 및 추론, 판단의 과정과 결과에 이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은 이에 대한 대응의 불확실성과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인권 및 안전에 관한 법령과 정책의 집행 효과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상대방이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1.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계획 등을 사전 공개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청회 등으로 수렴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조달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부터 설명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2.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든 인공지능과 민간이 개발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 중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 등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은 사용된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 일반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23.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그 결정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당사자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 특히,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만 개인에게 법적 효력 또는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방식을 거부하거나 인적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제3절 자기결정권의 보장

25. 「대한민국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은 결정의 주체인 개인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외부의 강요 없이 누구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간섭 없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2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그 통제력 보장의 핵심은 정보주체의 동의권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단순한 외형적 의사 표시만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반 상황을 설명받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27.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는 처리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받을 권리, 개인정보 접근 및 열람권, 개인정보처리 동의권 및 정정·삭제권, 처리정지요구권 등을 포함하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사용, 보관, 삭제하는지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8.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29.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서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 기울여 보호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의사결정의 내용과 관련성이 없거나,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제4절 차별 금지

30.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신체조건, 피부색,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등 개인 특성에 따라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1. 따라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 배척,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인권의 인정과 향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2.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신체조건, 피부색,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등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3. 또한 인공지능의 결정이 특정 집단이나 일부 계층에게 차별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4.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선정, 알고리즘의 설계와 활용방향 설정 등 인공지능 개발 전 과정에 걸쳐 편향이나 차별의 요소가 배제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습 데이터의 개별 요소를 검사하고 차별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5. 특히 학습용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 단계부터 차별적 요소를 통제하고 데이터 편향성을 최소화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이 특정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6. 개발한 인공지능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데이터 품질과 위험을 관리하고, 차별적 결과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개선의 조치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7.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촉진시키고, 인공지능의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5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38. 국가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권적 가치가 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39. 국가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와 차별의 가능성 및 정도,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수, 사용된 데이터의 양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제도로 관리되거나 감독될 수 없는 새로운 분야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40. 인권영향평가 내용에는 인공지능의 특성, 상황, 범위 및 목적을 감안하여 인권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원칙 및 내용, 국제 인권 기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권침해 위험요인의 분석,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야 합니다.
41. 인권영향평가는 개발 및 출시 전에 실시하고 인공지능의 기능 또는 범위 변경 시 평가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42.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국가와 기업은 인권영향평가 결과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편향성 및 위험성이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원칙적

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그 개발과 활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43. 국가는 인권영향평가를 인권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인권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제6절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44. 국가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개발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에서 인권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과 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하며, 특히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5. 국가는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인공지능이 금지되는 영역, 상당한 제한이 필요한 인공지능 고위험 영역,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 제한된 위험을 가진 영역, 위험성이 거의 없는 영역 등 적절하게 인공지능의 위험성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규제 수준과 인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46. 특히, 당사자의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 등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개인 정보 보호, 차별 금지 등 그 규제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47. 감독 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위법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 구제 및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 인공지능 및 민간 고위험 인공지능 개발자 및 운영자는 사용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 등을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8. 국가는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개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는 인지 또는 진정으로 접수한 사건을 조사

하기에 충분한 자원, 권한 및 전문지식을 구비해야 합니다.

49. 국가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을 받은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가 기관의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은 언제든지 구제가 가능하도록 그 책임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50. 국가는 대량 감시와 차별로 이어지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할 위험이 높은 얼굴인식 등 원격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을 공공장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되, 인권침해나 차별의 위험성이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51. 국가는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및 의견 표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2. 국가는 확대되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노동 시장의 일자리 감소, 전자적 노동 감시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해야 합니다.
53. 또한 국가는 생명의 존엄성 및 윤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자율살상 무기에 대하여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고 그 연구, 개발, 생산 및 활용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초점

May 2021 No.1

#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경선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경선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leeks@kisdi.re.kr

## 요약

- '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신뢰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서 AI 규제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시
- EU AI 규제안은 EU의 가치, 기본권, 원칙을 존중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AI 시스템 사용이 가져올 고위험 상황을 명시하고 있는 한편, 규제가 과도한 제약, 기술개발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소필요조건으로 제한된 균형있고 비례적인 수평규제방식, 현 법안이 미래에도 작동가능하도록 원칙기반 유연한 프레임워크로 제안됨
- 해당 규제안은 아직 승인절차가 남았으나 AI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규제의 표준으로 자리잡으며 AI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AI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하고 공정한 AI 활용을 위한 국내 AI 규제논의를 본격화하고 증거기반 규제가 가능하도록 AI 시스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및 축적 노력을 함께 추진

## 01 개요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안전하고 공정한 활용을 위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규제안\*을 발표
  - \* EUROPEAN COMMISSION (2021.4.2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유럽의회, 회원국 승인이 필요하나 AI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 세계 AI 규제의 입법 방향 및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에 본 고에서는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 02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배경 및 규제방향

### I 배경 및 목적

- 유럽위원회는 EU의 가치, 기본권, 원칙을 존중하는 한편, 기술 리더십 유지, 신기술 혜택의 향유를 위해 신뢰가능한 AI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안
- EU AI 규제안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다음의 4가지를 언급
  -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이 안전하고 기본권 및 EU 가치에 관한 기존 법률을 존중하도록 보장
  -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 지원을 위해 법적 불확실성 제거
  - AI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기본권 및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기존 법률의 거버넌스 및 효과적인 집행 강화
  -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단일 시장 구축 지원 및 시장파편화 방지

### I 규제방향

- AI의 혜택·위험을 고려한 균형있고 비례적인 규제방식,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원칙기반의 유연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시
  - (Balanced & Proportionate) AI 규제가 과도한 제약, 기술개발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소필요 조건으로 제한된 균형있고 비례적인 수평규제방식(balanced and proportionate horizontal regulatory approach)을 제안

- 정당한 원인이 존재하는 구체적 상황에 한정된 법적 개입을 의미하는 위험 기반 비례적인 규제방식(risk-based approach) 채택
- 현재 혹은 가까운 시일 내 발생가능한 실질적 영향을 기준으로 위험 상황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에 고위험 AI 시스템의 추가, 채택 권한을 부여
- (Robust & Flexible) 미래에도 작동가능하도록 원칙기반 요구사항(principle-based requirements)을 바탕으로한 유연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시
  - 위험에 비례하는 법적 의무를 원칙기반으로 부여하면 구체적인 구현방식은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 사용자가 결정
- (Uniform) AI 시스템 개발, 마케팅, 사용 시 EU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시

## 03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

### I AI 정의

- AI 시스템에 대한 법적 모호성을 피하면서도 기술진화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기반하여 AI를 정의
  - 머신러닝, 논리·지식기반 접근법, 통계적 접근법 등을 활용해 개발되고, 인간이 정의한 목적을 위해, 상호 작용하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예측, 추천, 의사결정 등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I 위험수준별(Risk-based) 규제

- AI 위험을 수준에 따라 unacceptable, high, low or minimal로 구분하고 위험수준에 비례하는 위험관리를 제안
  - AI 시스템의 의도된 사용목적, 사용정도, 건강·안전·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피해의 강도 및 범위, 피해복원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AI 시스템의 위험수준을 평가
  - 용인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활용은 금지, 고위험(high risk) AI 시스템은 요구사항 충족 시 허용

리스크 기반 AI 시스템 위험관리

<p><b>용인할 수 없는 위험 (unacceptable risk)</b></p>	<p>▶ 기본권 침해 등 EU 가치에 위배되는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서의 AI 시스템 활용은 금지</p> <p>(a)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subliminal technique)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왜곡/조작</p> <p>(b) 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에 기반한 특정 그룹의 취약성 악용</p> <p>(c) 공공기관이 AI 기반 사회적 점수화(social scoring)를 통해 자연인의 신뢰도를 평가 및 분류</p> <p>(d) 법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사용.</p> <p>단, 범죄 피해자 표적수색, 임박한 위험방지 등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p>
<p><b>고위험 (high risk)</b></p>	<p>▶ 자연인의 건강/안전/기본권에 고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은 요구사항 준수, 사전 적합성 평가 수행이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 AI 시스템은 (a) 제품의 안전요소로서 사용되어 사전 제 3자 적합성 평가가 요구되는 AI 시스템, (b) 생체 인식 및 분류, 교육, 고용, 법집행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활용되는 AI 시스템</li> <li>요구사항은 ①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② 데이터 거버넌스 수행, ③ 기술 문서화, ④ 기록, ⑤ 이용자에게 투명성 및 정보 제공, ⑥ 사람에 의한 감독, ⑦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li> </ul> <p>▶ 위원회는 건강/안전/기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추가, 채택의 권한을 가짐</p>
<p><b>낮은 위험 (non-high risk; low or minimal risk)</b></p>	<p>▶ 낮은 위험(non-high risk)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부여된 요구사항들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자발적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s)의 수립이 권장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적으로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접근권, AI 시스템의 설계/개발 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개발팀의 다양성 보장 등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권장됨</li> </ul> <p>▶ ① 챗봇처럼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② 감정인식, 생체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적) 분류에 사용되거나, ③ 딥페이크처럼 진짜처럼 보이는 콘텐츠의 생성·조작에 사용되는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성 의무 : 해당 AI시스템의 제공자, 사용자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시스템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동방식 등을 고지할 필요</li> </ul>

참고: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룰

▶ 고위험 AI시스템은 아래 ①, ②조건을 만족시키거나, Annex III에 언급된 AI 시스템

- ① AI 시스템이 제품의 안전요소이거나 AnnexII에 리스트업된 것과 같이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에서 언급된 제품일 때, ② Annex II에 리스트된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에 따라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나 서비스를 위해 제 3자 적합성 평가가 요구되는, 안전요소가 AI 시스템인 제품이거나 AI 시스템 그 자체

• Annex II에 언급된 제품

- ① (Section A) machinery, toy, recreational craft, personal watercraft, lifts, 폭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radio equipment, pressure equipment, cableway installation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medical devices,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② (Section B) civil aviation security, two- or three-wheel vehicles and quadricycles, agricultural and forestry vehicles, marine equipment, rail system, motor vehicles and their trailers, and of systems, components and separate technical units, unmanned aircraft and their engines, propellers, parts and equipment



• Annex III에서 언급된 AI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8가지

구분	내용
1. 자연인의 생체 인식 및 분류:	(a) 자연인의 'real time', 'post' 원격 생체 인식 식별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2. 중요 인프라의 관리 및 운영:	(a) 도로 교통 및 물, 가스, 난방 및 전기 공급의 관리 및 운영에서 안전 구성 요소로서 사용되도록 의도된 AI 시스템
3. 교육 및 직업훈련:	(a) 교육 및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자연인의 접근을 결정하거나 할당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시스템 (b) 교육 및 직업 훈련 기관의 학생을 평가하고 교육 기관 입학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험에서 참여자를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시스템
4. 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에 대한 접근:	(a) 자연인의 채용 및 선택, 특히 공석 광고, 심사 또는 지원서류 필터링, 인터뷰 또는 테스트 과정에서의 후보자 평가 등을 위해 사용되는 AI 시스템 (b) 승진, 업무 관련 계약 관계의 종료, 작업 할당, 이러한 관계에서의 사람의 성과 및 행동을 모니터링,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AI
5. 필수 개인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 혜택에 대한 접근 및 향유:	(a) 공공 지원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한 자연인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혜택 및 서비스를 부여, 축소, 취소 또는 회수하기 위해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의도된 AI 시스템 (b) 소규모 공급자가 자체 사용을 위해 서비스하는 AI 시스템을 제외한, 자연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신용 점수를 정하는 데 사용되는 AI 시스템 (c) 소방관 및 의료 지원을 포함, 긴급 first response 서비스의 파견 또는 파견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AI 시스템
6. 법 집행:	(a) 법 집행 당국이 자연인의 공격 또는 재범 위험, 또는 형사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b) 법 집행 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및 유사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연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c) 제 52조(3)에 언급된 바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이 딥페이크를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d) 형사 범죄 수사 또는 기소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 (e) 법 집행 기관이 자연인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실제 또는 잠재적 범죄 행위의 발생 또는 재발을 예측하거나 또는 자연인 또는 그룹의 성격적 특성 및 특징, 또는 과거 범죄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f) 형사 범죄의 탐지, 조사 또는 기소 과정에서 자연인의 프로파일링을 위해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 (g) 법 집행 당국이 데이터에서 알려지지 않은 패턴을 식별하거나 숨겨진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 또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의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자연인에 대한 범죄 분석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7. 이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	(a) 관할 공공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및 유사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연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기위한 AI 시스템 (b) 관할 공공기관이 회원국의 입국을 원하거나 입국한 자연인의 보안, 비정규 이민, 건강 위험 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c) 관할 공공 기관에서 자연인의 여행 및 관련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AI 시스템 (d) 관할 공공기관에서 망명, 비자 및 거주 허가를 신청하는 자연인의 적격성 평가, 관련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8. 정의와 민주적 과정의 관리:	(a) 사법 당국이 사실과 법을 조사 및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 고위험(high risk) AI 시스템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시스템 공급자, 제조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 수입업체, 사용자, 기타 제3자에게도 법적 의무 부과
  - 고위험 AI 시스템 공급자의 경우, 요구사항의 준수, 사전 적합성 평가절차 수행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부과

#### 고위험 AI 시스템 공급자의 법적 의무

- (a) 요구사항의 준수
- (b) 품질 관리 시스템 (규정준수를 위한 전략, 시스템 디자인 / 테스트 / 데이터 관리 관련 절차 및 방법, 위험관리 시스템, 사후(post-market) 모니터링, 책임 체계 등) 구축
- (c) 고위험 AI 시스템의 기술 문서 작성
- (d) 통제하에 있을 때 고위험 AI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기록의 보관
- (e) 고위험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나 서비스 전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수행
- (f) 등록의무(제품 출시나 서비스 전 EU 데이터베이스에 AI 시스템 등록) 준수
- (g) 요구사항에 위배되는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시정조치 수행
- (h) AI 시스템이 사용되거나 서비스되고 있는 회원국 국가 관할 당국, 또한 해당되는 경우, 인증 기관에 비준수사항 및 수행한 시정조치를 통지
- (i) 규정준수를 알 수 있도록 고위험 AI 시스템에 CE 마크 부착
- (j) 국가 관할 기관 요청 시, 고위험 AI 시스템의 요구사항 준수를 입증

- 고위험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해당 제품들과 함께 서비스되는 경우, 제품 제조업체는 AI 시스템 공급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님
- 수입업체, 유통업체에게는 요구사항 준수 확인, 위험 감지 시 통지, 요구사항 준수에 위협이 되지 않는 보관/운송, 정보제공 및 협조의 의무 등이 부과

고위험 AI 시스템의 수입, 유통업체의 법적 의무

수입업체	유통업체
<p>1. 아래 사항의 확인할 의무</p> <p>(a) AI 시스템 공급자의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 수행 여부</p> <p>(b) 제공자가 주어진 방식에 따른 기술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p> <p>(c) 시스템에 요구되는 적합성 표시, 필수 문서 및 사용 지침의 제공 여부</p> <p>2. 고위험 AI 시스템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준수할 때까지 해당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되며, 고위험 AI 시스템이 건강/안전/기본권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AI 시스템 공급자와 시장 감시 당국에 그 영향을 알려야함</p> <p>3. 자신의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표시, 고위험 AI 시스템에 연락할 수 있는 주소 표시(가능하지 않은 경우 포장 또는 첨부 문서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p> <p>4. 고위험 AI 시스템이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동안, 적용가능하다면, 보관 또는 운송 조건이 주어진 7가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p> <p>5. 합리적 요청이 있을 시, 국가 관할 당국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자와의 계약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공급자의 통제를 받는 범위까지, 고위험 AI 시스템의 요구사항 준수 입증에 필요한,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액세스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 또한 해당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가 관할 당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 해당 당국에 협력</p>	<p>1. 고위험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고위험 AI 시스템에 필수 CE 적합성 마크가 있는지, 필수 문서 및 사용 지침이 첨부되었는지, 적용가능하다면, 공급자와 수입업체가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p> <p>2. 고위험 AI 시스템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당 AI 시스템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해당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되며, 고위험 AI 시스템이 건강/안전/기본권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AI 시스템 공급자, 수입업자에게 통지</p> <p>3. 고위험 AI 시스템이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동안, 적용가능하다면, 보관 또는 운송 조건이 주어진 7가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p> <p>4. 시장에 출시된 고위험 AI 시스템이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유통업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정조치, 회수, 리콜 등을 취하거나, 공급자, 수입업자 또는 관련 운영자가 해당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함. 고위험 AI 시스템이 건강/안전/기본권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즉시 회원국 국가 관할 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미준수 및 취해진 시정조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p> <p>5. 국가 관할 당국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시, 국가 관할 당국에 고위험 AI 시스템의 요구사항 준수 입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국가 관할 당국이 취하는 조치에 대해 해당 당국에 협력</p>

- 또한, 누구라도 자신의 이름, 상표로 고위험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하는 경우, 또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고위험 AI 시스템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공급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됨
  - 위에 언급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고위험 AI 시스템을 처음에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시작한 제공자는 더 이상 법안의 대상이 되는 공급자로 간주되지 않음
-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자에게도 제공된 사용지침 사용, 시스템 목적에 맞는 인풋 데이터 활용, 시스템 모니터링, 위험인지 시 통보 및 사용금지, 기록보관,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제공된 정보의 활용 등의 의무가 부과
  - 이때, '사용자'는 자체 권한 하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에이전시,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단, 개인적으로 non-professional 활동을 위해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자의 법적 의무

1.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사용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사용해야함
2. 1의 의무는 연합 또는 국내법에 따른 다른 사용자 의무와 제공자가 명시한 인적 감독 조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자체 자원 및 활동을 조직하는 사용자의 재량을 침해하지 않음
3. 1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한, 사용자는 입력 데이터가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함
4. 사용자는 사용 지침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의 운영을 모니터링해야함. 사용지침에 따른 사용이 건강/안전/기본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급자 또는 유통업체에 이를 알리고 시스템 사용을 중지해야함. 또한 제 62조가 의미(기본권 침해)하는 심각한 사고나 오작동을 발견한 경우 공급자 또는 유통업체에게 이를 알리고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해야함.
5.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위험 AI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로그를 보관해야함. 로그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과 연합 또는 국내법에 따른 적용 가능한 법적 의무에 비추어 적절한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함
6.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자는, 해당되는 경우, 규정 (EU) 2016/679 제 35조 또는 지침 (EU) 2016/680 제 27조에 따른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 13조 (투명성 및 정보제공의 의무)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사용해야함

- 고위험 AI 시스템에 부과되는 의무는 AI 시스템의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된다면 EU 외 제 3국에 존재하는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에게도 적용

- 규정 위반 시, 침해의 성격, 심각성, 침해기간·결과, 중복부과 여부, 사업자 규모 및 시장 점유율, 시정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위반 규정 시 과징금

구분	과징금
용인할 수 없는 AI 시스템의 활용 금지, 데이터 거버넌스 의무규정 위반 시	- 최대 3천만 유로, 전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연매출액의 최대 6% 중 더 큰 금액 - EU 기관, 에이전시, 위원회의 경우, 최대 50만 유로
그 외 규정 위반 시	- 최대 2천만 유로, 전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연매출액의 최대 4% 중 더 큰 금액 - EU 기관, 에이전시, 위원회의 경우, 최대 25만 유로
인증기관, 국가관할당국에 부정확, 불완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최대 1천만 유로 또는 전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연매출액의 최대 2% 중 더 높은 금액

## I 혁신저해 방지

- 본 규정이 혁신의 장애물,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AI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준수비용 (compliance cost) 경감등을 지원
  - (규제샌드박스) 혁신적인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나 서비스 전, 제한된 시간 동안 개발, 테스트 및 검증을 지원하는 통제된 환경 제공
    - 규제샌드박스는 사전 관할당국에 승인된 테스트 계획에 한해 적용
    - AI 규제 샌드박스하에서는 공공의 이익(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 예방 및 조사, 공공보건/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한 특정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이 특정 조건 하에서 허용
  - (소규모 기업지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AI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소규모 기업을 고려한 (기업규모에 비례하는) 방식의 적합성 검사 수수료 산정 등을 추진

## I 추진체계

- EU 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해 각국, 유럽위원회 대표자들로 유럽 인공지능 이사회(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 구성
  - 위원회는 전문적 식견 및 모범 사례의 수집 및 공유, 본 규정과 관련된 의견, 권고, 가이드라인 제시, 동일한 규정적용을 위한 협업 등을 수행
  - 또한, 각국은 법안의 적용 및 수행의 감독을 위해 국가 감독기구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국가 관할 기관을 지정

# 04 EU AI 규제안에 대한 각계의 평가와 시사점

## I EU AI 규제안에 대한 각계의 평가

- 관련 업계, 인권단체 등은 EU의 AI 규제안을 환영하면서도 각각 기업부담,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비했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임
  - IT 기업들로 구성된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에서는 위험기반 접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규제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 소프트웨어 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촉구

## EU AI규제안에 대한 Digital Europe 사무총장 Cecilia Bonefeld-Dahl의 7가지 질문

## 1. 고위험(High Risk)은 무엇인가?

- 위험기반 접근에서 무엇이 고위험인지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하며,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함

## 2. GDPR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 GDPR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에게는) 규정 준수 비용이 엄청났고 구현이 어려웠음을 상기할 필요
- 적절한 훈련, 지침, 충분한 구현 시간이 필요하며, GDPR때와 달리 EU 회원국에서 실제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행되는지 확인이 필요

## 3.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가?

- 적합성 평가는 물리적 제품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SW의 특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특별한 규칙 필요
- 행정적 업무를 위한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한 적합성 평가를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확장하면 엄청난 바틀넥 발생 가능(ex. 사이버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는 평가되고 승인되는데 소요되는 몇 주를 기다릴 수 없음)
- 특히 대부분 소규모 회사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를 감당하기 힘들

## 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정이 있는가?

- 더 간단한 규칙, 더 긴 적응 시간, 재정적인 지원으로 고위험 분야 소규모 혁신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5. 혁신이 가능한가?

- 고위험 분야에서도 수많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입법은 명확하고 유연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하며, (AI 표준은 진행중이며, 최신 개발 상황이 반영될만큼 빠르게 업데이트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주도하는(industry-driven) 표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6. 샌드박스는 그저 유행어인가?

- 아이디어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의 보장이 중요한데, 이는 기업에 대한 제한된 책임과 구체적인 보장을 포함해야 함
-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새로운 AI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되어야 함

## 7. 만약 당신이 AI 스타트업에 투자할 100만 유로가 있다면, 이 규정을 본 후에도, 유럽에 투자하겠습니까?

자료: Digital Europe(2021.4.20)

- 광범위한 기술 기업들을 대표하는 국제 무역기구로 미국에 본사를 둔 CCIA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EU의 위험기반 접근을 반기면서도 이번 규제안이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Fortune, 2021.4.21)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은 AI 솔루션에 대해 EU의 가치, 법적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노력을 높이 사면서도 이번 규제안에 EDPS가 요구했던 공공 장소에서의 “원격” 바이오 식별 시스템 금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언급(EDPR, 2021.4.23)
- 인권단체 ‘유럽 디지털 권리’는 불명확한 워딩, 잘 정의되지 못한 개념 등으로 생체정보를 이용한 대규모 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의 위험을 충분히 규제하는데 실패했다며 기본권에 기반(fundamental rights-based)한 접근을 요구(EDRi, 2021.4.22)
-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규제안이 미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기술에 EU가 국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평가
  - 이미 확보한 막대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국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존재(Fortune, 2021.4.21)
    - \* 콜롬비아 법대 교수인 Bradford는 EU 위원회는 유럽이 뒤처져있는 동안 AI 기술을 이미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기업과 비교하여 유럽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언급, CClA 협회 부회장인 Christian Borggreen는 그러나 EU가 규제만으로 AI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Fortune, 2021.4.21)
- EU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대적인 AI 알고리즘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
  -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4월 19일 ‘기업의 AI 사용에서의 진실, 공정성, 평등을 위하여’라는 성명문 발표(FTC, 2021.4.19)

## I 시사점

- EU 규제안이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 EU의 규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AI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에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다 사건을 계기로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고 공정한 AI 활용을 위한 규제논의를 본격화할 필요
  - EU AI 규제안이 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균형있는,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그러나, EU AI 규제안에 대한 각계의 상반된 반응이 보여주듯이 국민의 안전,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혁신저해를 방지하고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서 사회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과정, 합의과정이 필요
  - AI 기술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AI 글로벌 규제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EU 사이에서 우리 나라 AI 생태계의 발전, 우리 AI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성 모색에 대한 고민도 필요
- AI 시스템의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AI 시스템의 성과·한계, 순기능·역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 수집·축적 노력도 수반될 필요

 참고문헌

Digital Europe(2021.4.20), “[BLOG] Seven questions to ask when looking at the EU’s new AI regulation tomorrow”, <https://www.digitaleurope.org/news/seven-questions-to-ask-when-looking-at-the-eus-new-ai-regulation-tomorrow/>.

EDRi(2021.4.22.), New AI law proposal calls out harms of biometric mass surveillance, but does not resolve them, <https://edri.org/our-work/new-ai-law-proposal-calls-out-harms-of-biometric-mass-surveillance-but-does-not-resolve-them/>.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2021.4.23),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 welcomed initiative, but ban on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in public space is necessary, Press Release, [https://edps.europa.eu/press-publications/press-news/press-releases/2021/artificial-intelligence-act-welcomed-initiative\\_en](https://edps.europa.eu/press-publications/press-news/press-releases/2021/artificial-intelligence-act-welcomed-initiative_en).

European Commission(2021.4.2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Federal Trade Commission(2021.4.19), “Aiming for truth, fairness, and equity in your company’s use of AI”, <https://www.ftc.gov/news-events/blogs/business-blog/2021/04/aiming-truth-fairness-equity-your-companys-use-ai>

Fortune(2021.4.21), “Europe proposes strict A.I. regulation likely to have an impact around the world”.



# 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



연번	제목	저자
2021-01-01	<b>초점</b>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라성현·정재윤
2021-01-02	<b>정책동향</b> 영국, 온라인 유해물 유통 회사에 대한 정책 방향 발표	전성호
2021-01-03	<b>정책동향</b> 영국의 유선전화 요금정책: BT의 자발적 요금 인상 제한 방안을 중심으로	윤도원
2021-02-01	<b>초점</b>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장재영
2021-02-02	<b>초점</b> 반도체산업 성장에서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Foundry 중요성	김민식·이영중
2021-02-03	<b>정책동향</b>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EU회원국의 대응동향	황해인
2021-03-01	<b>초점</b> 모바일 앱 카테고리별 시장구조 및 이용시간의 변화(2019년~2020년)	하승희·이채성
2021-03-02	<b>연구동향</b> 2020년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인공지능 사회정책 이슈와 대응 방향 고찰	조성은
2021-03-03	<b>시장동향</b> 터키의 방송시장과 한-터키 방송 콘텐츠 교류 현황	노은정
2021-04-01	<b>정책동향</b>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동향	정연희
2021-04-02	<b>초점</b> AI Multi-curation과 OTT 서비스 콘텐츠의 이용행태 변화	심흥진
2021-04-03	<b>정책동향</b>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서비스 현황	이은민

KISDI PERSPECTIVES는 국내 외 정보통신방송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문의 : 노희윤 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hyooon@kisdi.re.kr, 043-531-4042)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21.4.2021  
COM(2021) 206 final

ANNEXES 1 to 9

**ANNEXES**

to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SEC(2021) 167 final} - {SWD(2021) 84 final} - {SWD(2021) 85 final}

**인공 지능에 관한 조화 규칙(인공지능법) 제정 및  
특정 유럽 연합 법규 개정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규정(Regulation) 제안**

**부속서**

**부속서 II**  
**EU 조화 법률 목록**

**섹션 A –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EU 조화 법률 목록**

1. 지침(Directive) 95/16/EC 를 개정하는, 기계에 관한 2006 년 5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Directive) 2006/42/EC (OJ L 157, 9.6.2006, p. 24) [기계 규정(Machinery Regulation)에 의해 폐기됨]
2. 장난감의 안전에 관한 2009 년 6 월 18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Directive) 2009/48/EC (OJ L 170, 30.6.2009, p. 1)
3. 지침 (Directive) 94/25/EC 를 폐기하는, 레크리에이션용 선박 및 개인용 선박에 관한 2013 년 11 월 20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Directive) 2013/53/EU (OJ L 354, 28.12.2013, p. 90)
4.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 구성품과 관련하여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관한 2014 년 2 월 26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Directive) 2014/33/EU (OJ L 96, 29.3.2014, p. 251)
5.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장비 및 보호 시스템과 관련하여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관한 2014 년 2 월 26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Directive) 2014/34/EU (OJ L 96, 29.3.2014, p. 309)
6. 지침(Directive) 1999/5/EC 를 폐기하는, 무선 장비의 시장 출시와 관련하여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관한 2014 년 4 월 16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Directive) 2014/53/EU (OJ L 153, 22.5.2014, p. 62)
7. 압력 장비의 시장 출시와 관련하여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관한 2014 년 5 월 15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Directive) 2014/68/EU (OJ L 189, 27.6.2014, p. 164)
8. 지침(Directive) 2000/9/EC 를 폐기하는, 공중 케이블 설치에 관한 2016 년 3 월 9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2016/424 (OJ L 81, 31.3.2016, p. 1)
9. 유럽 이사회 지침(Directive) 89/686/EEC 를 폐기하는, 개인 보호 장비에 관한 2016 년 3 월 9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2016/425 (OJ L 81, 31.3.2016, p. 51)
10. 지침(Directive) 2009/142/EC 를 폐기하는, 가스 연료 연소 기기에 관한 2016 년 3 월 9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2016/426 (OJ L 81, 31.3.2016, p. 99)
11. 지침(Directive) 2001/83/EC, 규정(Regulation) (EC) No 178/2002 및 규정(Regulation) (EC) 1223/2009 를 개정하고 유럽 이사회 지침(Directive) 90/385/EEC 및 93/42/EEC 를 폐기하는, 의료 기기에 관한 2017 년 4 월 5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2017/745 (OJ L 117, 5.5.2017, p. 1)
12. 지침(Directive) 98/79/EC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결정(Decision) 2010/227/EU 를 폐기하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에 관한 2017 년 4 월 5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2017/746 (OJ L 117, 5.5.2017, p. 176).

## 섹션 B. 기타 EU 조화 법률 목록

1. 규정(Regulation) (EC) No 2320/2002 를 폐기하는, 민간 항공 보안 분야의 공통 규칙에 관한 2008 년 3 월 11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C) No 300/2008 (OJ L 97, 9.4.2008, p. 72)
2. 2 른 또는 3 른 차량 및 4 른 오토바이의 승인 및 시장 감시에 관한 2013 년 1 월 15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No 168/2013 (OJ L 60, 2.3.2013, p. 52)
3. 농업 및 임업용 차량의 승인 및 시장 감시에 관한 2013 년 2 월 5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No 167/2013 (OJ L 60, 2.3.2013, p. 1)
4. 유럽이사회 지침(Directive) 96/98/EC 를 폐기하는, 해양 장비에 관한 2014 년 7 월 23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Directive) 2014/90/EU (OJ L 257, 28.8.2014, p. 146)
5. EU 내 철도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에 관한 2016 년 5 월 11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Directive) (EU) 2016/797 (OJ L 138, 26.5.2016, p. 44)
6. 규정(Regulation) (EC) No 715/2007 및 (EC) No 595/2009 를 개정하고 지침(Directive) 2007/46/EC 를 폐기하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그리고 그러한 차량을 위한 시스템, 구성 요소 및 별도의 기술 장치의 승인 및 시장 감시에 관한 2018 년 5 월 30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2018/858 (OJ L 151, 14.6.2018, p. 1). 3.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C) 2018/858 를 개정하고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C) No 78/2009, (EC) No 79/2009 및 (EC) No 661/200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Regulation) (EC) No 631/2009, (EU) No 406/2010, (EU) No 672/2010, (EU) No 1003/2010, (EU) No 1005/2010, (EU) No 1008/2010, (EU) No 1009/2010, (EU) No 19/2011, (EU) No 109/2011, (EU) No 458/2011, (EU) No 65/2012, (EU) No 130/2012, (EU) No 347/2012, (EU) No 351/2012, (EU) No 1230/2012 및 (EU) 2015/166 를 폐기하는, 자동차 일반 안전 및 차량 탑승자와 취약한 도로 사용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리고 그러한 차량을 위한 시스템, 구성 요소 및 별도의 기술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요구 사항에 관한 2019 년 11 월 27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2019/2144 (OJ L 325, 16.12.2019, p. 1)
7. 무인 항공기 및 엔진, 프로펠러, 부품 및 이를 원격으로 제어할 장비와 관련하여 제 2 조 1 항 (a) 및 (b)에 언급된 항공기의 설계, 생산 및 시장 출시에 관하여 EU 항공 안전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을 설립하고,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C) No 2111/2005, (EC) No 1008/2008, (EU) No 996/2010, (EU) No 376/2014 및 지침(Directives) 2014/30/EU 및 2014/53/EU 를 개정하고,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C) No 552/2004 및 (EC) No 216/2008 와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EC) No 3922/91 를 폐기하는, 민간 항공 분야의 공통 규칙에 관한 2018 년 7 월 4 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2018/1139 (OJ L 212, 22.8.2018, p. 1)

**부속서 III**  
**제 6 조 2 항에서 언급된 고위험 시스템**

제 6 조 2 항에 따른 고위험 AI 시스템은 하기 영역에 나열된 AI 시스템이다:

1. 자연인의 생체 인식 및 분류:
  - (a) 자연인의 '실시간' 및 '사후' 원격 생체 인식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2. 중요 인프라의 관리 및 운영:
  - (a) 도로 교통, 물, 가스, 난방 및 전기 공급의 관리 및 운영에서 안전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AI 시스템
3. 교육 및 직업 훈련:
  - (a) 교육 및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거나 자연인을 할당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시스템
  - (b) 교육 및 직업 훈련 기관의 학생을 평가하고 교육 기관 입학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참가자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시스템
4. 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에 대한 접근:
  - (a) 자연인 모집 또는 선정, 특히 결원 광고, 지원자 심사 또는 선별, 인터뷰 또는 테스트 과정에서의 후보자 평가에 사용하는 AI 시스템
  - (b) 업무 관련 계약 관계의 촉진 및 종료에 대한 결정, 작업 할당,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성과 및 행동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AI.
5. 필수적인 민간 서비스, 공공 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 및 향유:
  - (a) 공공 기관에 의해 또는 공공 기관을 대신하여 공공 지원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해 자연인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그러한 혜택 및 서비스를 부여, 축소, 취소 또는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 (b) 소규모 공급 업체가 자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을 제외하고 자연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신용 점수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 (c) 소방관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하여 긴급 대응 서비스를 파견하거나 우선 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6. 법 집행:
  - (a) 자연인의 범죄 또는 재범 위험 또는 형사 범죄의 잠재적 피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서 자연인에 대한 개별 위험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 (b) 법 집행 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및 유사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연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 (c) 제 52 조 3 항에 언급된 딥 페이크 감지를 위해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AI 시스템
- (d) 범죄 수사 또는 기소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AI 시스템
- (e) 법 집행 기관이 지침 (EU) 2016/680 의 제 3 조 4 항에 언급된 자연인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범죄 행위의 발생 또는 재발을 예측하거나 또는 자연인 또는 그룹의 성격 및 특성 또는 과거 범죄 행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AI 시스템
- (f) 형사 범죄의 탐지, 조사 또는 기소 과정에서 지침(Directive) (EU) 2016/680 의 제 3 조 4 항에 언급된 자연인의 프로파일링을 위해 법 집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
- (g) 자연인에 대한 범죄 분석에 사용되어 법 집행 기관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 또는 다양한 데이터 포맷에서 사용 가능한 관련성이 있거나 없는 복잡한 데이터를 검색하여 데이터의 알 수 없는 패턴을 식별하거나 숨겨진 관계를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AI 시스템

7. 이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

- (a) 관할 공공 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및 유사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연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 (b) 회원국의 영토에 입국을 시도하거나 입국한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보안 위험, 비정규 이민 위험 또는 건강 위험을 포함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관할 공공 기관이 사용하는 AI 시스템
- (c) 관할 공공 기관이 여행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자연인의 문서를 지원하고, 보안 기능을 확인하여 비 인증 문서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시스템
- (d) 망명, 비자 및 거주 허가 신청, 신분 신청 자연인의 적격성과 관련된 민원 등의 조사를 위해 관할 공공 기관을 지원하는 AI 시스템

8. 사법 행정 및 민주적 절차:

- (a) 사법 당국이 사실과 법을 조사 및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AI 시스템

**부속서 IV**  
**제 11 조 1 항에 언급된 기술 문서**

제 11 조 1 항에 언급된 기술 문서는 적어도 관련 AI 시스템에 적용되는 하기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하기를 포함하여 AI 시스템에 대한 일반 설명:
  - (a) 의도된 목적, 시스템 개발자, 시스템의 날짜 및 버전
  - (b) AI 시스템이 상호 작용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AI 시스템 자체의 일부가 아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
  - (c)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의 버전 및 버전 업데이트와 관련된 요구 사항
  - (d)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되는 모든 형태에 대한 설명
  - (e) AI 시스템이 실행될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
  - (f) AI 시스템이 제품의 구성 요소 인 경우, 해당 제품의 외부 특징, 마킹 및 내부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사진 또는 그림
  - (g) 사용자를 위한 사용 지침 및 해당되는 경우 설치 지침
2. 다음을 포함한 AI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
  - (a) 관련이 있는 경우 제삼자가 제공하는 사전 훈련된 시스템 또는 도구에 대한 의존성 및 공급 업체가 이러한 도구를 사용, 통합 또는 수정한 방법을 포함하여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 수행되는 방법 및 단계
  - (b) 시스템 설계 규격, 즉, AI 시스템 및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로직, 시스템이 사용되도록 의도된 개인 또는 그룹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와 가정을 포함한 주요 설계 선택 사항, 주요 분류 선택 사항, 시스템이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대상과 다양한 매개 변수의 관련성, 타이틀 III, 챕터 2 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채택된 기술 솔루션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결정
  - (c)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구축 또는 상호 투입,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방식을 설명하는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AI 시스템을 개발, 훈련, 테스트 및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팅 리소스
  - (d) 관련이 있는 경우, 훈련 방법론과 기술을 설명하는 데이터 시트의 데이터 요구 사항과 데이터 세트의 출처, 범위 및 주요 특성을 포함하여 사용된 훈련 데이터 세트, 데이터 획득 및 선택 방법, 라벨링 절차(예: 지도 기계 학습의 경우), 데이터 정리 방법(예: 이상 값 감지)
  - (e) 제 13 조 3 항 d 호에 따라 사용자가 AI 시스템의 출력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제 14 조에 따라 필요한 인적 감독 조치에 대한 평가

- (f) 해당하는 경우, 타이틀 III, 챕터 2 에 명시된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AI 시스템의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기술 솔루션과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와 함께 AI 시스템 및 성능에 대해 사전 결정된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 (g) 사용된 검증 및 시험 데이터와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용된 검증 및 테스트 절차, 정확성, 견고성, 사이버 보안 및 타이틀 III, 챕터 2 에 명시된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와 잠재적인 차별적 영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측정 기준, 그리고 (f)에 언급된 사전 결정된 변경 사항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담당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 테스트 로그 및 모든 테스트 보고서
3.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AI 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 및 제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시스템이 사용되는 특정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정확도의 정도 및 의도된 목적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정확도 수준을 포함한 역량 및 성능 한계, AI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건강과 안전, 기본권 및 차별에 대한 위험의 예상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 및 출처, 사용자의 AI 시스템 출력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여 제 14 조에 따라 필요한 인적 감독 조치,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력 데이터에 대한 사양.
  4. 제 9 조에 따른 위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수명주기 동안 시스템에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6.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된 참고 문헌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적용된 조화 표준 목록. 그러한 조화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기타 관련 표준 및 기술 사양 목록을 포함하여 타이틀 III, 챕터 2 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된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
  7. EU 적합성 선언 사본
  8. 제 61 조 3 항에 언급된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여 제 61 조에 따라 시판 후 단계에서 AI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



## 미국 정부 인공지능 규제 접근

### □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sup>1)</sup>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 Making Automated Systems Work For The American People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lueprint-for-an-AI-Bill-of-Rights.pdf>

2022. 10.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이하 기본원칙 번역)

####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우리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시스템의 우려사항, 위험성 및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 이해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발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에 대하여 사전적인 배치 테스트, 위험 식별 및 완화 조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시스템이 의도된 대로 사용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의도된 사용을 벗어나는 안전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완화조치를 취하였고, 분야별 표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시스템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여러분의 안전이나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또는 그러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의도되지 않았으나 예측가능했던 사용 또는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을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동화된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및 배치 시 부적절하거나 관련 없는 데이터의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그 재사용으로 인한 복합적인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평가와 보고가 수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잠재적 위해를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가능할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1) 국내보도의 경우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10/06/KRZITHMLNABNNXNWS2ED4O544/](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10/06/KRZITHMLNABNNXNWS2ED4O544/)

## **알고리즘 차별로부터 보호**

여러분은 알고리즘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시스템은 공평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 차별이란,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종, 피부색, 민족, 성별(임신, 출산 및 관련 건강 상태, 성 정체성, 간성 상태, 성적 지향 포함), 종교, 연령, 출신 국가, 장애, 퇴역 상태, 유전 정보, 기타 법률이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특성에 기반하여 개인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다르게 대우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때 발생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 차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설계, 개발 및 도입하는 기관은 알고리즘 차별로부터 개인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공평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사전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로서, 시스템 설계, 대표 데이터 사용 및 인구집단 특성별 대리변수 보호에 대한 사전 공평성 평가를 수행하고,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배치 전 및 지속적으로 편향성 테스트 및 완화 조치를 수행하고, 조직적 감독을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알고리즘 영향평가 형식의 독립적인 점검과 쉬운 용어로 이루어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편향성 테스트 결과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가 가능한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여러분은 설치형 보호(Built-In Protection)를 통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여러분에 관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가 기본설정으로 보장되는 설계를 선택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러한 설계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특정 상황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설계가 포함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설계, 개발 및 도입하는 기관은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접근, 전송 및 삭제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최대한 여러분의 허락을 구해야 하며,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대안적인 프라이버시 기본설계 보호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이용자 선택을 모호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기본설정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용자 경험 및 설계상 결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는 적절하고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수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동의 요청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데 대한 결정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이용을 요구하면서 현재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통지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관행은 변화해야 합니다. 건강, 직업, 교육, 형사 사법, 금융을 포함하는 민감한 영역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 및 추론,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제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감한 영역에서 여러분의 개인정보 및 관련된 추론은 필수적인 기능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윤리적 검토 및 사용 금지 조치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집단은 견제되지 않은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 기술이 사생활과 시민권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와 이를 제한하는 범위를 최소한 배치 전에 평가하는 등 감시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감시 및 모니터링 기술이 교육, 직업, 주택 분야에서 사용되거나, 그러한 감시 기술의 사용이 개인의 권리, 기회 또는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여타의 상황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한 여러분의 개인정보 결정권이 존중되었음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권리, 기회 또는 접근에 미치는 감시 기술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통지 및 설명**

여러분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에 작동하는 방법과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설계, 개발 및 도입하는 기관은 전반적인 시스템 기능 및 자동화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시스템이 사용 중이라는 통지, 시스템을 책임지는 개인이나 기관, 그 결과물에 대하여 명확하고 시기적절하며 공개적인 설명 등을 쉬운 용어로 서술한 문서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용 사례 또는 주요 기능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을 결정한 방법과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자동화된 시스템이 결과물을 결정하는 유일한 입력이 아닌 경우에도 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여러분과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는 운영자 및 기타 사용자에게 기술적으로 유효하고 유의미하며 유용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위험 수준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한 요약 정보가 쉬운 용어로 포함된 보고서와 더불어, 이들 통지 및 설명의 명확성과 품질에 대한 평가 내용이 가능한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 인간 대안, 검토 및 대체

적절한 경우 여러분은 제외(opt-out)될 수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여러분은 인간 대안을 선택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제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적절성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에 기반하고 광범위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특히 위해적 영향으로부터 일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률이 인간 대안 또는 다른 대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실패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고자 할 때, 여러분은 대체 절차 및 재심 절차를 통해 시기적절한 인간 검토 및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검토 및 대체는 접근 가능하고, 공평하고, 효과적이며, 계속 유지되고, 적절한 직원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일반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사법, 고용, 교육 및 보건의료 또는 그 밖의 민감한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은 해당 목적에 추가적으로 맞추어야 하고, 감독기관에 유의미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적인 결정이나 고위험 결정에 대한 인간의 검토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 거버넌스 절차에 대한 설명과 적시성, 접근성, 결과물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가능한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 □ 미국 의회 알고리즘책임법안 (2022. 2. 3. 발의)<sup>2)</sup>

(이하 발췌 번역)

### 제2장 정의

#### (7) 대상 기업이란,

(A) 총칙. “대상 기업”이라는 용어는 연방거래위원회법(15 U.S.C. 45(a)(2)의 5(a)(2)장에 따라 위원회[FTC]가 관할하는 다음 개인, 파트너 및 회사를 의미한다.

(i)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배치하는 경우로서

(I) 평균 연간 총수입이 5천만 달러를 초과했거나, 1986년 내국세입법 448(c)장 (2) 및 (3)항에 따라 결정된 가장 최근 회계연도 이전의 3과세연도 기간 동안(해당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개인, 파트너 또는 회사가 존재했던 기간 동안) 지분 가치가 2억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거나

(II)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발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1백만 건 이상의 소비자, 가구 또는 소비자 장치에 대한 식별 정보를 소유, 관리, 수정, 처리, 분석, 제어 및 기타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III) (I) 또는 (II)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개인, 파트너 또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경우

(ii) 다음의 경우

(I) 평균 연간 총수입이 5백만 달러를 초과했거나, 1986년 내국세입법 448(c)항 (2) 및 (3)항에 따라 결정된 가장 최근 회계연도 이전의 3과세 연도 기간 동안(해당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개인, 파트너 또는 회사가 존재했던 기간 동안) 지분 가치가 2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II) (i)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인, 파트너 또는 회사가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구현 또는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거나, 또는 구현 또는 사용될 것으로 대상 기업이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배치

(iii) 지난 3년 간 (i) 또는 (ii) 조항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한 경우

(B) 인플레이션 조정 - 이 법의 제정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첫 번째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연도에 이 단락을 적용하기 위해 (A)호에 명시된 각 달러 금액은 다음과 같이 증가해야 한다. 모든 도시 소비자(미국 도시 평균)에 대한 소비자 물가

2)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 H.R.6580 및 S.3572, SEC.4.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6580/text> (접근일: 2022. 10. 1)>.

지수(있는 경우)의 해당 제정일 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회계 연도부터 해당 회계 연도까지의 백분을 증가.

(8) 중요한 의사결정 - “중요한 의사결정”이란 용어는 다음에 대한 접근 또는 비용, 조건 및 가용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삶에 법적으로나 중요한 또는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의미한다.

- (A) 평가, 인정, 인증을 포함한 교육 및 직업 훈련
- (B) 고용, 근로자 관리, 자영업
- (C) 전기, 난방, 수도, 인터넷·통신 접근, 교통과 같은 필수 설비
- (D) 입양 서비스, 생식 서비스를 포함한 가족 계획
- (E) 모기지 회사, 모기지 브로커, 채권자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금융 서비스
- (F)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안과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 (G) 주택 임대, 단기 주택 임대, 숙박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주택 및 숙박
- (H) 사적 중재 또는 조정을 포함한 법률 서비스
- (I) 위원회가 규칙 제정을 통해 소비자의 삶에 비교적 법적, 물질적 또는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기회 결정

(12) 영향 평가 - “영향평가”란 용어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이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절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과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영향평가**

(a)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총칙. 다음의 경우 위법하다.

- (A) 대상 기업이 (b)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위반하는 것
- (B) 누구든지 (b)항을 위반하는 대상 기업에 대해 고의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2) 사적 계약 선점 금지. 기업과 소비자 간에 특정하게 합의한 바와 관계없이 대상 기업이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b) 규정

(1) 총칙. (2)항에 따라, 위원회[FTC]는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립표

준기술원장,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 과학기술정책국장 및 표준 기구는 물론, 표준 기구, 민간 산업계, 학계, 기술 전문가, 인권 옹호자, 소비자 및 영향을 받는 집단을 포함한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미합중국법 제5편 553항에 의하여 공포한다.

(A) 각 대상 기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i) 섹션 2(7)(A)(i)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개인, 파트너 또는 회사가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구현 또는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거나, 또는 구현 또는 사용될 것으로 대상 기업이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배치

(ii) 대상 기업에 의한 배치 전후로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

(B) 각 대상 기업에 대하여, 제(A)항에 따라 수행한 영향 평가에 대한 문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배치된 기간보다 3년 더 긴 기간에 해당하는 섹션 4(a)의 정보가 포함된다.

(C) 제2(7)(A)(i)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각 개인, 파트너 또는 회사에 대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판매, 라이선스 부여 또는 기타 상업적 관계를 통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배치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 파트너 또는 회사에게 대상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D) 각 대상 기업에 대하여, 배치된 자동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영향 평가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E) 각 대상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 요약 보고서를 대상 기업이 이를 배치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F)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배치하지만 대상 기업이 아니면서 연방거래위원회법(15 U.S.C. 45(a)(2)조) 5(a)(s)장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하는 개인, 파트너 또는 회사가 이러한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수행된 영향 평가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G) 각 대상 기업에 대하여, (A)호에 기술된 영향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각 대상 기업이 관련 내부 이해관계자(직원, 윤리 팀 및 담당 기술팀 등) 및 독립적인 외부 이해관계자(영향을 받는 집단의 옹호자나 대표, 시민 사회 및 인권단

체, 기술 전문가 등)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의미 있는 협의(참여 설계, 독립 감사 또는 피드백 요청 및 통합)를 할 것을 요구한다.

(H) 각 대상 기업에 대하여, 소비자의 삶에 법적 또는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영향을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I) 다음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여야 한다.

(i)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액세스 또는 비용, 조건 또는 가용성“을 구성하는 요소

(ii) 식별 정보와 관련하여 “소유“, “관리“, “변경“ 및 “통제“를 구성하는 요소

(iii) 대상 기업이 섹션 5(1)(H)에 따라 문서화해야 하는 다양한 범주의 제3자 결정 수령인

(iv)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소비자, 대상 기업 및 규제 기관에 알릴 목적으로 2(8)장의 하위 항목 (A)에서 (I)까지에 설명된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기회

(J) 개인, 파트너 또는 회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들이 대상 기업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식별하여 소유, 관리, 수정 또는 제어하는 소비자, 가구 또는 소비자 장치의 수를 계산하도록 한다.

(K) 대상 기업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대상 기업이 배치한 다양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및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들에 있어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한다.

(L) 하위 단락 (D), (E), (F)에 설명된 요약 보고서에 필요한 양식을 수립하여, 이러한 보고서가 액세스 가능하고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제4절 대상 기업 영향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a) 영향평가 요구사항 —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제3절(b)(1)에 따라 요구되는 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대상 기업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대상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새로운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전에, 해당 중요 의사결정에 사용된 기존의 모든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다음의 관련 문서 및 정보와 함께 검토한다.

(A)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개선 또는 대체되는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B)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 기존 프로세스의 알려진 위해, 단점, 오류 사례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중요한 부정적 영향

(C)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의도하는 편익 및 필요성

(D)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의도하는 목적

(2) 제3절(b)(1)(G)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서화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한다.

(A) 협의한 이해관계자의 연락처

(B) 협의 일자

(C) 협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한 다음의 정보

(i) 이해관계자와 대상 기업 간 법적 또는 재정적 합의의 존재 유무 및 성격

(ii) 이해관계자와 상호교류한 모든 데이터, 시스템, 설계, 시나리오 및 기타 문서와 자료

(iii)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개발 또는 배치를 변경하는 데 사용된 이해관계자의 모든 권장사항, 사용되지 않은 권장사항 및 미사용 근거

(3) 관련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또는 기타 연방정부 모범 사례 및 표준에 따라,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개인정보 위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테스트 및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A)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데이터 최소화 관행 및 관련 식별 정보와 결과적으로 내려진 중요 결정이 저장되는 기간을 평가하고 문서화한다.

(B) 연합 학습(federated learning), 차등 개인정보보호, 안전한 다자간 계산, 비식별화, 위협 수준에 기반한 보안 데이터 영역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여,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에 대해 시행 중인 정보 보안 조치를 평가한다.

(C)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가 소비자와 식별 정보의 개인정보보호,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현재 및 잠재적 미래, 또는 외부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문서화한다.

(4) 다음 사항에 대한 문서화를 포함하여 기준(benchmarking) 데이터셋, 대상 기업의 과거 데이터의 대표 예시, 기타 표준과 같은 측정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현재 및 과거 성능에 대하여 지속적인 테스트 및 검토를 수행한다.

(A) 대상 기업이 성공적인 수행과 기법으로 간주하는 사항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 및 사업 측정기준(metrics)에 대한 설명

(B) 테스트 조건에서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성능에 대한 검토, 또는 이러한 성능 테스트가 수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C) 배치 조건에서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성능에 대한 검토, 또는 배치 조건에서 성능이 검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D) 배치 조건에서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성능을 테스트 조건과 비교하거나, 이러한 비교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

(E) 소비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체성, 연령, 장애, 종교, 가족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병역 퇴역 상태, 또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특성(해당 특성의 조합을 포함)과 관련된 모든 차별적인 수행에 대한 검토. 대상 기업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검토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 데이터에서 해당 특성을 식별하는 데 사용한 방법(우편번호를 비롯한 대리적인(proxy)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에 대한 정보 및 문서화

(F) 테스트 및 검토에 하위 집단이 사용된 경우, 사용된 하위 집단과 해당 하위집단이 테스트 및 검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방법 및 이유에 대한 설명

(5) 모든 관련 피고용인, 계약직 및 기타 직원에게, 유사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문서화된 내용들과, 업계 모범 사례 및 제안, 인권단체·언론·학계 전문가의 발간물에 기반하여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평가 개발이나 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수행한다.

(6)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특정한 사용 및 적용에 대한 보호막이나 한정의 필요성과 개발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는 이용약관, 라이선스 계약 및 당사자 간 기타 법적 계약 등의 방법으로 사용 및 적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7)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결정 프로세스를 개발, 테스트, 유지 관리, 갱신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및 기타 입력 정보의 최신 문서를 다음과 같이 유지 관리하고 보관한다

(A)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데이터 및 기타 입력 정보를 취득한 시기 및 방법, 해당되는 경우 라이선스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i) 파일 유형, 파일 생성·수정일, 데이터 필드 설명 등 데이터 및 기타 입력 정보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메타데이터

(ii) 대상 기업이 데이터 및 기타 입력 정보를 수집, 추론, 획득한 방법론. 해당되는 경우 대상 기업이 수집, 추론, 획득하기 전 해당 데이터 및 기타 입력 정보가 라벨링, 분류, 정렬, 군집화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해당 데이터 및 기타 입력 정보에 라벨링, 분류, 정렬, 군집화를 적용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

(iii) 소비자가 자신에 관한 데이터 및 기타 입력 정보의 포함 및 추가 사용에 대하여 설명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이 포함 및 추가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 사항에 대하여 제공받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B) 해당 데이터 및 기타 입력 정보가 사용된 이유 및 다른 대안이 탐색되었는지 여부

(C) 데이터 및 기타 입력 정보에 대한 다음의 기타 정보

(i) 데이터셋의 대표성 및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배치되는 인구 집단 분포에 대한 가설 등 해당 요소가 측정된 방법

(ii) 데이터 품질, 그 품질의 검토 방법, 데이터를 정규화, 수정 또는 정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

(8) 소비자의 다음 권리를 검토한다.

(A) 대상 기업이 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i)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가 사용될 것이라는 명확한 통지

(ii) 이러한 사용에서 제외(opt-out)될 수 있는 방법

(B)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평가하고, 소비자가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정정·재심을 청구하거나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i) 그 변경 시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가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기여 요인 설명 등 특정 결정에 대한 기여 요인을 포함해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에 대해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소비자, 대표자 및 대리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ii)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대상 기업에 제출한 불만, 분쟁, 정정, 재심, 제외 요청에 대한 문서

(iii) 소비자의 우려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 기업이 취한 모든 시정 조치의 과정 및 결과

(C) 제3절(b)(1)(D)(iii)에서 위원회가 정의한 바에 따라, 제3자 결정 수취인이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결과에 대한 사본을 받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를 기술하고, 해당 제3자 결정 수취인의 범주를 기술한다.

(9)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식별하고 적용가능한 완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해당 영향을 식별하고 측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문서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식별하고 측정한다.

(B) 시장에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철수하거나 개발을 종료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식별된 중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문서화한다.

(C) 식별된 중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영향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문서화하고, 이해관계가 차별적이면서 설득력 있음을 설명하고 해당 이해관계가 다른 수단으로 충족될 수 없는 이유(2명 이상의 소비자에 대한 영향 간에 동등한 제로섬 균형이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한 완화 조치가 민권 또는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를 자세히 서술한다.

(D) 소비자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식별, 측정, 완화 또는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 및 관행을 문서화하고, 관련 부서와 직원이 해당 프로토콜 및 관행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는 방법을 문서화한다.

(10)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관련한 개발 및 배치 절차에 대하여 다음 정보에 대하여 진행 중인 문서화를 설명한다.

(A) 테스트일, 배치일, 라이선스 부여일, 기타 중요한 일정

(B) 관련 부서, 사업단위 및 이와 유사한 내부 이해관계자의 연락처

(11) 다음 영역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 또는 해당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평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기능, 도구, 표준, 데이터셋, 보안 프로토콜, 이해관계자 참여 개선 및 기타 자원을 식별한다.

(A) 정확성, 견고성 및 신뢰성을 포함하는 성능

(B) 편향성[방지]과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공정성

(C) 투명성, 설명가능성, 이의제기가능성 및 소구 기회

(D)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E) 개인 및 공공의 안전

(F) 효율성과 적시성

(G) 비용

(H)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영역

(12) (1)~(11)호에 서술된 사항 중 시도되었으나 실행이 불가능하여 준수할 수 없었던 영향평가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없었던 다음의 근거에 대하여 문서화한다.

(A) 다른 사람, 제휴자, 기업이 개발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특정 정보가 부재함

(B) 대상, 고객, 라이선스 사용권자, 파트너 및 기타 개인, 제휴자 또는 기업이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특정 정보가 부재함

(C) 해당 데이터가 수집, 추론 또는 저장하기에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차별적 수행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인구집단 및 기타 데이터가 부족함

(D) 기술 혁신을 포함하여 해당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능이 부족함

(13)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타 진행 중인 연구 또는 검토를 수행하고 문서화한다.

(b) 구성 규칙 —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대상 기업이 자신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영향평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여타의 기준, 절차 및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 영향평가의 비공개 —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대상 기업에게 위원회 또는 일반에 이 법에 따라 수행된 영향평가에 포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제3절(b)(1)의 (D) 및 (E)에 따라 요구되는 요약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여기서 제외된다.

## SEC. 9. 집행.

### (a) 위원회에 의한 집행.

(1)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 - 본 법 또는 이에 따라 공포된 규정의 위반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8조(a)(1)(B)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정의하는 규칙의 위반으로 간주된다(15 U.S.C. 57a(a)(1)(B)).

### (2) 위원회의 권한.

(A) 일반적 사항 - 위원회는 연방거래위원회법(15 U.S.C. 41 이하)의 모든 해당 약관 및 조항이 본 법에 통합되어 본 법의 일부가 된 것처럼 동일한 방식, 동일한 수단, 동일한 관할권, 권한 및 의무로 본 법과 본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집행한다.

(B) 특권 및 면책 - 본 법 또는 이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으며 연방거래위원회법(15 U.S.C. 41 이하)에 규정된 특권 및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C) 권한 보존 - 본 법의 어떠한 조항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 규칙 제정 - 위원회는 미국 법전 5장 553조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규칙을 공포해야 한다.

(b) 주별 집행 - 주별 집행

(1) 일반적 사항 - 주 법무장관이 주 주민의 이익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위반하는 관행으로 인해 위협을 받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 법무장관은 해당 주 주민을 대신하여 적절한 구제를 받기 위해 미국의 적절한 지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권리

(A) 위원회에 대한 통지.

(i) 일반적 사항 - (ii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법무장관은 (1)항에 따른 민사 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위원회에 해당 민사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ii) 내용 - (i)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는 민사 소송을 개시하기 위해 제출할 소장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iii) 예외 - 주 법무장관이 (1)항에 따른 민사 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i)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법무장관은 민사 소송을 개시하는 즉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B) 위원회의 개입 -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i) (1)항에 따라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

(ii) 개입 시

(I) 민사 소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II) 민사 소송의 결정에 대한 항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조사 권한 - 이 하위 섹션의 어떠한 조항도 주 법무장관이 조사를 수행하거나, 선서 또는 확인을 관리하거나, 증인의 출석 또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의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주 법률에 의해 법무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4) 장소, 소송 절차 서비스.

(A) 장소 - (1)항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다음 중 한 곳에서 제기할 수 있다.

(i) 미국 법전 28장 1391조에 따른 재판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지방법원, 또는

(ii)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

(B) 소송 절차 송달 - (1)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지역에서나 송달될 수 있다.

(i) 피고가 거주자이거나, 발견될 수 있거나, 사업을 거래하는 지역, 또는

(ii) 미국 법전 28장 1391조에 따라 재판지가 적절한 경우.

(5) 기타 주 공무원에 의한 조치 - 다음과 같은 경우

(A) 일반 - (1)항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기하는 민사 소송 외에도, 주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주정부의 다른 공무원은 법무장관이 제기하는 민사 소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건 및 제한에 따라 (1)항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구제 조항 - 이 하위 섹션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해당 국가의 민법 또는 형법 위반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주요국가 인공지능법안 관할기관

### □ 미국 알고리즘책임법안 (상하원 공동발의)

- 연방거래위원회(FTC)

※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 미국법을 위반하여 시장에 출시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FTC법 제18조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정의하는 규칙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

(해설서 EXPLANATORY)

#### 1.2. 정책 분야에서 기존 정책 조향과의 일관성

본 제안의 수평적 성격은 고위험 AI 시스템이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적용되는 기존 유럽 연합 법규와의 완전한 일관성을 요구한다.

또한, EU 기본권 헌장과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및 성평등에 관한 기존의 유럽 연합 2차 입법을 통해서도 일관성이 보장된다. 본 제안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Regulation (EU) 2016/679)과 법 집행 지침(Directive (EU) 2016/680)을 침해하지 않으며, 특정한 고위험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사용에 적용되는 일련의 조화 법령과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의 특정한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이를 보완한다. 나아가, 본 제안은 특히 AI 시스템의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세트의 설계 및 품질과 관련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 요구사항과 AI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테스트, 위험 관리, 기록 및 인간의 감독에 대한 의무를 통해 차별 금지에 관한 기존의 유럽 연합 법규를 보완한다. 본 제안은 유럽 연합 경쟁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인 고위험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본 제안은 일관성을 보장하고, 중복을 피하고,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부문별 안전 법규에 통합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New Legislative



Framework, NLF)가 적용되는 제품(예: 기계류, 의료 기기, 장난감)의 고위험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본 제안에 제시된 AI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은 관련 NLF에 따른 기존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부로 점검을 받을 것이다. 요구사항들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AI 시스템에 특유한 안전 위험에는 본 제안의 요구사항이 적용되지만 NLF는 최종 제품의 전반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AI 시스템을 최종 제품에 안전하게 통합하는 데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제안과 같은 날 채택된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에 대한 제안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충실히 반영한다. 전통적 접근 방식(Old Approach) 법규가 적용되는 제품(예: 항공, 자동차)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 제안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법규에 따른 관련 이행 또는 위임 입법을 채택할 때는 본 제안에 제시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ex-ante) 필수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규제 대상인 신용 기관이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AI 시스템이 신용 기관의 내부 지배구조를 통해 어느 정도 암암리에 규제되는 경우 본 제안과 유럽 연합의 금융 서비스 법규에 따른 의무의 일관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 연합 금융 서비스 법규의 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을 본 제안의 요구사항을 감독하는 관할 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일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 절차와 본 제안에 따른 제공자의 절차적 의무 중 일부가 신용 기관의 활동에 대한 접근과 건전성 감독에 관한 Directive 2013/36/EU14에 따른 절차에 통합된다.

4. (중략) 회원국은 법적 요구사항을 시행할 감독 기관을 지명해야 한다. 이들의 감독 기능은 예컨대 적합성평가 기관 또는 시장 감시와 관련된 기존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충분한 전문기술과 인적 자원 및 재원을 요구할 것이다. 각 회원국의 기존 구조에 따라 이는 회원국당 1~25명의 상근 상당 인력(Full Time Equivalents, FTE)에 이를 수 있다.

5.2.6. (중략) 제8편(Title VIII)은 AI 시스템의 제공자에 대해 출시 후 모니터링 및 보고, 그리고 AI 관련 사건 및 오작동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시장 감시 기관은 시장을 통제하고 이미 출

시된 모든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 및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시장 감시 기관은 Regulation (EU) 2019/1020에 따라 시장 감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사후 집행은 AI 시스템이 출시된 후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예기치 않은 위험을 초래할 경우 공공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또한 운영자가 규정에 따른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한다. 본 제안은 회원국 수준에서 추가 기구 또는 기관이 자동으로 설립될 것으로 예견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원국은 기존의 부문별 기관을 임명하여 규정의 조항들을 모니터하고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고 그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 모든 내용은 회원국의 기존 시스템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본권과 관련된 의무를 사후 집행할 권한의 할당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존의 감독 및 집행 기관 역시 그들의 임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문서를 요구하고 접근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시장 감시 기관에 대해 기술적 수단을 통한 고위험 AI 시스템의 테스트를 조직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전문)

(79) 유럽 연합 조화 법령인 본 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의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Regulation (EU) 2019/1020에 의해 수립된 시장 감시 및 제품의 준수를 위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 권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등 기구를 포함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유럽 연합법의 적용을 감독하는 국가 공공 기관 또는 기구 역시 본 규정에 따라 작성된 모든 문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